

인천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2005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2. 7. 6.

판결 선고2022. 8. 3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9. 17. 접수 제3404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른 금전 채권자이다.

나. 피고와 D은 1997. 5.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인 2009.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4. 7. 피고와 D 앞으로 각 1/2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D은 2018. 12.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D은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을 증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D의 채무초과 여부 D이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기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적극 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107,500,000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1) 위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9. 17. 이후인 2018. 10. 23.에 D이 취득한 것이나, 2017. 3. 2. D이 위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을 하였고 2018. 6. 5.경 이전을 하였다가 4개월만에 다시 D이 소유권등록을 한 점, 화물차량은 지입약정을 통해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화물차량은 D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00,000,000		
합계	207,500,000		
소극 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E)	9,780,404	

D	적극 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107,500,000
F 채무(계좌번호 1 생략)	4,903,000		
A 채무 (G)	25,825,000		
F 채무(계좌번호 2 생략)	30,249,000		
H에 대한 채무	14,118,055		
I 채무 (J)	129,376,000		
I 채무 (K)	15,589,000		
L은행 채무 (계좌번호 3 생략)	16,979,000		
개인(M)에 대한 채무	50,000,000		
합계	296,819,459		
순자산 합계	-89,319,459		
피고	적극 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107,500,000
N조합 출자금 (계좌번호 4 생략)	1,176,935		
N조합 예금 (계좌번호 5 생략)	5,512,787		
N조합 예금 (계좌번호 6 생략)	30,000,000		
N조합 예금 (계좌번호 7 생략)	24,462,424		
N조합 예금 (계좌번호 8 생략)	50,000,000		
N조합 적극금 (계좌번호 9 생략)	2,150,000		
합계	220,802,146		
소극 재산		0	
순자산 합계	220,802,146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와 D의 재산 현황이 앞서 본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D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① D은 이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화물차량의 피담보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채무들의 상당 부분은 피고와 D의 혼인생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D은 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상태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와 D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한 반면,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는 D이 승계하였는바, 위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거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③ 피고는 2009.경부터 2014.경까지 PC방,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O체육회에서 근무하였으나, D도 2002.경부터 화물차량 운행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점 및 그 동안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D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혼 당시 D은 피고에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위 재산분할에 자녀의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국

별지

1) 위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9. 17. 이후인 2018. 10. 23.에 D이 취득한 것이나, 2017. 3. 2. D이 위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을 하였고 2018. 6. 5.경 이전을 하였다가 4개월만에 다시 D이 소유권등록을 한 점, 화물차량은 지입약정을 통해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화물차량은 D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